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2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696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피 고	○○특별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안○○
변 론 종 결	2023. 10. 24.
판 결 선 고	2024.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83,790,230원, 지방교육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2

187,037,710원, 농어촌특별세 31,172,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나. 원고는 2017. 8. 18. B구역 재개발정비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이 시행하는 ○○ ○○○구 C 일대 D 아파트 단지 내 상가용 건축물 지하 E호 등 36개 호실(건물면적 4,016.95㎡, 대지면적 963.45㎡)을 일괄 매각하는 내용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해당 상가용 건축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18.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36개 호실을 일괄적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D아파트 단지내상가(근린생활시설) 일괄매각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일괄매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각 호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2017. 8. 28. 이 사건 조합과 'D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8.부터 2018. 1. 10.까지 이 사건 상가 중 35개 호실[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F 등(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고 한다)에게 분양하는 내용의 '단지 내 상가 매매(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8. 6. 21.부터 2018. 6. 2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8.

1) 피고의 설명에 의하면 2017년 11월경 이 사건 상가는 48개의 호실로 분할되었는데 그중의 일부 호실이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2

10. 17. 원고에게 취득세 1,483,790,230원, 지방교육세 187,037,710원, 농어촌특별세 31,172,930원 등 합계 1,702,000,8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1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3. 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일괄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기재하였고, 이후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상가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가 유치한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원고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수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직접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분양권을 전매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2

1) 이 사건 일괄매각계약 중 특약사항의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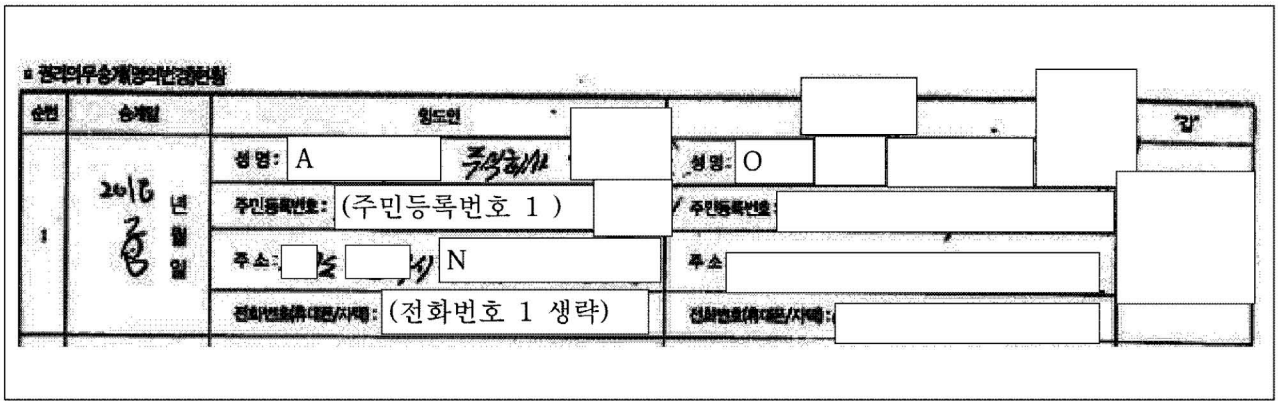
> 1. 분양권 전매
> ①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전에 본 분양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사업주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승계로서는 '갑'(이 사건 조합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이 경우 권리의무의 양도, 양수에 따른 모든 책임과 비용은 양도, 양수인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인(점유자를 포함한다)은 '을'의 '갑'에 대한 이 계약 및 분양계약과정에서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② 본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는 '갑'의 사전승인 및 '갑' 요청하는 서류에 '갑' 및 양수인과 양도인이 함께 배석하여 작성 및 확인 후 양도, 이전 또는 승계할 수 있다. (중략)
>
> 2. 분양권 전매대금의 관리
> ①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각대금 상환을 위해 분양권 전매대금의 입금통장의 명의는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개설(공동날인)하여 분양대금을 관리키로 하며, 통장잔고에 대한 이자는 '을'에게 귀속된다.
> ② '을'은 공동명의 통장에서 인출을 요할시 '갑'의 승인을 받아 인출하여야 하며, 중도금 납입대금을 초과한 공동통장잔고에 대해서는 '갑'에게 언제든지 인출요청을 할 수 있다.
> ③ '갑'은 매각대금에 한하여 ①항의 공동명의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 대금납입일에 도달하여 대금인출을 '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중략)
>
> 4. 일괄책임 및 계약의 해지
> '을'은 전체 36개 호실에 대해 일괄책임을 지며, 잔금 입주만료일까지 전체 호실에 대한 납입금 100%가 납입되지 않을 시 계약은 자동해지되고 그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전매가 있는 경우 권리승계된 내용에 대해서도 '갑'에게 귀속된다.

2)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의 각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현황'를 보면(을 제3호증), '양도인' 및 '양수인'란에 원고 및 이 사건 수분양자들의 서명날인이 있고, '갑'란에 이 사건 조합의 날인이 있다(위 각 권리의무승계를 이하 '이 사건 각 권리의무승계'라 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2

다). 이 사건 각 권리의무승계일은 2018. 2. 1., 2018. 2. 6., 2018. 2. 8., 2018. 2. 22., 2018. 3. 29.로 확인된다(다만 G호, H호, I호, J호, K, L에 관한 공급계약서에서는 권리의무승계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M호의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현황' 기재를 예시로 보면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각 권리의무승계일 이전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잔금을 원고의 계좌(이하 '원고 단독계좌'라 한다) 또는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이하 '원고·조합 공동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제7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2

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등 참조).[2)]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을 제5,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일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이를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게 이전(전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해당 대법원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2

가) 원고는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일괄매각계약 및 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각 계약의 명칭을 보면 '단지내상가(근린생활시설) 일괄매각 공급계약서',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서'로 되어 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의 명칭도 '단지내상가 매매(분양)계약'으로 되어 있다. 위 각 계약의 내용을 보면 각 계약의 매수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뿐만 아니라 입금지정일 또는 입주시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매수인 지위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서와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매수인 지위에 있는 단지내상가 매매(분양)계약서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시기와 금액이 모두 다르고, 각각의 계약은 모두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한 매매대금은 원고의 단독계좌 또는 원고·조합 공동계좌로부터 송금되었다. (i) 원고 단독계좌에 있는 돈의 경우, 이는 어디까지 원고가 관리·통제권을 갖는 원고 소유의 돈이므로, 해당 돈이 이 사건 조합의 계좌로 송금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한 돈이라고 볼 수 있다. (ii) 원고·조합 공동계좌에 있는 돈의 경우,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이 예금에 대한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라면 예금채권의 준합유관계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고, 해당 계좌는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여(을 제2호증 특약사항 및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인출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예금채권은 원고와 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2

사건 조합에 분량적으로 분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의 취지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원고·조합 공동계좌를 통해 소유했던 돈이 이 사건 조합의 계좌로 송금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한 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이 위 공동계좌를 통해 소유했던 돈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동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으므로(그 이외의 경우에는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인출할 수 있다), 해당 돈이 원고의 의사 관여 아래 이 사건 조합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면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한 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해석으로 볼 때, 원고는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지급으로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이 사건 각 권리의무승계 이후에 위 수분양자들을 대신해 직접 이 사건 조합에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M호, P호, Q호, R호, S호, T호의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 대한 각 권리의무승계일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였으므로, 위 각 호실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머지 호실을 보더라도, ① 이 사건 일괄매각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하더라도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원고와 이 사건 수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2

양자들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특약사항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권리의무승계에 따라 이 사건 일괄매각계약 및 각 공급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는 점(만약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이 사건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위 특약에 따라 원래의 매수인이었던 원고에게 해당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한 매매대금은 원고의 단독계좌 및 원고·조합 공동계좌에서 송금되었고, 해당 각 계좌에 이 사건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이 입금되었기는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각 계좌에서 이 사건 조합의 계좌로 위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이체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③ 일반적인 권리의무승계의 경우 기존의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승계인이 기존의 부동산 매수인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의 금원에 프리미엄을 지급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뒤, 해당 승계인이 잔금을 부동산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승계인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조합에 직접 잔금을 지급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미분양된 상가인 13개 호실(이 사건 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이다)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2019년~2020년도 재산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다(을 제7호증의 1, 2),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대행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이 사건 일괄매각계약서상 이 사건 조합이 분양지원금으로 13억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2

용을 보더라도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일괄매각계약에서 분양대행 업무의 범위, 분양경비의 분담, 분양직원 관리 등에 관한 분양대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는 분양지원 내지 분양대행에 관한 내용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위 각 계약은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한편,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 제9조, 제11조, 제13조에 의하면(을 제3호증의 1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잔금납부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부담하고, 잔금납부일(입주일) 이후 발생하는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관리비 역시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단순히 분양대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만 어려운 대목이다], 분양대행 업무의 수행 여부 및 그 결과,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지급받는 금액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조합에 일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수수료 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분양권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2023. 9. 4.자 준비서면 4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된 입출금된 금액을 계정별원장에서 '분양대행수수료'가 아닌 '분양매출'로 표시하여 관리하여 오기도 한 점(을 제5호증)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분양대행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매매계약인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약정에 불과하여,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평가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2

바) 원고는 부산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1누10258,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54880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은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기존의 매수인이 토지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대법원판결은 매수인(원고와 같은 지위에 있는 주체이다)이 매도인(이 사건 조합과 같은 지위에 있는 주체이다)에게 (i) 매매대금의 약 85%를 지급하고, (ii) 매수인으로부터 권리의무승계를 받은 제3자가 매도인에게 직접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i)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모두를 지급하였고, (ii) 이 사건 각 권리의무승계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거나(이 사건 각 부동산 중 M호, P호, Q호, R호, S호, T호의 경우), 이 사건 각 권리의무승계 이후에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조합에 잔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사안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권리의무승계가 원고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조합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분양되지 않았을 경우의 위험을 떠안지 않기 위하여 위 각 권리의무승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기본적으로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각 권리의무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2

부터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 사건 조합 명의에서 이 사건 수분양자들 명의로 직접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기 이전의 편의를 봐준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판사 성○○

판사 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2

별지

관 계 법 령

■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2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